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3호
 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제명, 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 조례의 정책 범위를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범죄 피해 예방까지 확장하기 위해 제명과 관련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, 복지적·행정적 지원 차원의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2조제5호, 제6호) “장애인범죄” 를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, “장애인 거주시설” 을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상위법 개념을 원용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함.
- (안 제3조제2항, 제6조제3호, 제6조의2, 제8조의2) 군수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범죄 피해 예방·지원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신설한 것은 집행책임과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. 또한 신고체계 구축, 기관 간 연계, 법률·심리지원 및 사례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 사무에 해당하여 수사권과 충돌하지 않고, 행정·재정 여건을 고려한 규정으로 판단됨.
- (안 제7조2)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 1회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규정한 것으로,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지도·감독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됨.
- (안 제9조~제10조)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‘범죄피해 예방’ 을 포함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1조)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조례 체계의 간소화를 위한 정비 사항이며, 필요한 경우 규칙 또는 내부 지침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, 인권보장 및 범죄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, 법적·행정적 문제는 없으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